의안번호	2218079
의 뢰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6.6.29.
추계번호	26C1956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의2(고용평등공시) 신설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・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(이하 “고용평등공시”라 한다)하여야 하며,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・공개하여야 함(제1항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평등공시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으며,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할 수 있음(제7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2	안 제24조의4(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5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거나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・연구・교육・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3	안 제24조의5(고용평등전문기관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4	안 제24조의6(고용평등심의회)	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 심의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(제3항)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.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2(고용평등공시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4조의4(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 등)	
3	안 제24조의5(고용평등전문기관)	
4	안 제24조의6(고용평등심의회)	

2. 상세 사유

❑ 고용평등공시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・운영(안 제24조의2)

○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・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격차 등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, 공공기관의 장, 지방공단의 이사장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・직급별・고용형태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임금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안 제24조의2제1항)

○ 개정안에 따라 고용평등공시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고 사업주의 자료제출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이 필요하고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

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.

○ 다만, 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❑ 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(안 제24조의4)

○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거나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❑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(안 제24조의5)

○ 개정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하고, 고용평등공시 관련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,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기관을 예측할 수 없고, 개정안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현시점에서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될 업무범위 및 그에 따른 지원수준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❑ 고용평등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4조의6)

○ 개정안에 따라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두는 경우, 심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

○ 다만, 개정안에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 수 및 회의개최 횟수를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
❑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